

# I 선거운동 개요

## 1. 선거운동 정의 및 선거운동기간(공선법 §58, §59)

- “선거운동”이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함
- “선거운동기간”은 선거기간 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2020. 4. 2. ~ 2020. 4. 14.)를 말함
- 선거운동은 예비후보자와 문자메시지·인터넷홈페이지 이용 등 공선법에서 허용된 방법을 제외하고는 선거운동기간 중에만 할 수 있음

## 2.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 행위(공선법 §58)

-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 통상적인 정당활동
- 설날·추석 등 명절 및 석가탄신일·기독탄신일 등에 하는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 3.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공선법 §60)

-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와 미성년자(19세 미만)
- 선거법 등 선거일 현재 선거권이 없는 자
- 국가(지방)공무원과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  
※ 그 밖에 공선법 §60①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

## 4.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공선법 §218의14⑥)

- 한국국제협력단·한국국제교류재단·재외동포재단의 상근 임직원 및 이들 단체의 대표자
-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은 선거운동기간 중에도 선거운동이 금지됨

# II 국외선거운동 방법

## 1. 재외국민이 할 수 있는 국외 선거운동 (공선법 §59, §218의14①)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언제든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구분	할 수 있는 사례	할 수 없는 사례
문자 메시지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 정보 전송(음성·화상·동영상 가능) ※ 선거일도 가능하며 전송시간 제한은 없음	예비후보자, 후보자가 아닌 사람이 자동 동보통신(동시 수신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그 대상자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하여 전송하는 방식)으로 문자메시지 전송
인터넷 홈페이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을 게시	후보자가 아닌 사람이 인터넷 언론사의 인터넷홈페이지에 선거운동 광고
전자우편	전자우편(컴퓨터 이용자끼리 네트워크를 통하여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를 주고받는 시스템을 의미) 전송	예비후보자, 후보자가 아닌 사람이 전송대행업체 위탁을 통한 전자우편 전송

## 2. 정당·후보자만 할 수 있는 국외 선거운동 (공선법 §218의14)

-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의 선거운동기간 중 국내 위성방송시설을 이용한 방송광고·방송연설
- 후보자 또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의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 언론사의 홈페이지를 이용한 인터넷광고
- (예비)후보자의 자동 동보통신 방법으로 문자메시지 전송
- (예비)후보자의 전송대행업체에 위탁을 통한 전자우편 전송

# III 단체의 선거참여 활동

## 1. 단체의 국외 선거운동 금지(공선법 §218의14⑦)

- 단체(그 대표자와 임직원 또는 구성원 포함)는 그 단체의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일체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

## 2. 투표참여 권유활동(공선법 §58의2)

### | 할 수 있는 사례 |

- 개인이나 단체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 없이 자신의 명의로 순수하게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개인이나 단체가 법 제59조 제2·3호에 따라 인터넷홈페이지, 문자메시지,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정당·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투표참여 권유활동은 가능

### | 할 수 없는 사례 |

- 호별로 방문하여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경우
- 재외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경우
-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경우
-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표시한 현수막 등 시설물, 인쇄물, 확성장치·녹음기·녹화기(비디오 및 오디오 기기를 포함한다), 어깨띠, 표찰, 그 밖의 표시물을 사용하여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

# IV 재외국민·외국인이 선거법 위반 시 받는 불이익

## 1. 국외선거법에 대한 여권발급·재발급 제한 및 반납명령 등(공선법 §218의30)

- 제한 대상
  - 국외에서 「공직선거법」에 따른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혐의를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에 불응하거나 소재가 불명하여 조사를 종결할 수 없는 사람
  - 국외에서 「공직선거법」에 따른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기소중지 된 사람
- 제한 기간
 

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5년 이내  
(2020. 4. 16. ~ 2025. 4. 15.)

### ▶ 위반행위 조치사례

○○이 20여명의 조직원들에게 지시하여 한인 주택가에 특정 정당과 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이 게재된 인쇄물 1,000부 정도 배부 ⇒ 고발, 여권발급제한

## 2.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외국인의 입국금지 (공선법 §218의31)

- 입국금지 대상
 

국외에서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외국인
- 입국금지 기간
 

해당 선거 당선인의 임기만료일까지(~ 2024. 5. 29.)

※ 수사에 응하기 위하여 입국하려는 때에는 제외

소통과 학습의 재외선거  
대한민국의 희망이 됩니다.

대한민국의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사람이 조사를 거부하는 경우 재외 국민이더라도 사안에 따라 여권발급·재발급의 제한 또는 여권반납 등 국내에 있는 국민들과 마찬가지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재외선거에서도 대한민국의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 문화가 전 세계에 널리 전파될 수 있도록 재외국민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당부 드립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 V 정치관계법 위반사례예시

| 정치관계법 위반사례예시 |

## 1. 기부행위 등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재외국민에게도 선거권이 있어 재외국민 또는 재외동포 한인회 등이 정당·후보자(입후보예정자)로부터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받는 경우 기부행위 제한규정에 위반

## 할 수 없는 사례 |

- 한인회 대표자 등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를 위하여 재외국민에게 선물 또는 금품·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투표를 부탁하면서 재외선거권자에게 교통비·교통편의를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 외국을 방문한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음식물·서적 등을 제공받는 행위

## 2. 비방·허위사실의 공표 등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더라도 이를 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표”(공연성)의 요건을 충족

## 할 수 없는 사례 |

-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과 그의 직계존속을 비방하는 동영상(○○○, 빨갱이야!)을 게재하는 행위
- 한인 지역 언론이 입후보예정자에 대하여 보도한 기사를 기초로 하여 ‘○○○와 ○○○ 사이에 자녀가 있다고 사촌형부인 ◇◇◇ 총재가 말했나 보다’ 등 허위·비방 글을 트위터에 게시하는 행위

## 3. 언론·인쇄물·시설물 이용 선거운동

### | 할 수 있는 사례 |

- 정당의 대표자가 의례적인 내용의 연하장 또는 생일 축전을 재외거주 소속 당원에게 발송하는 행위

### | 할 수 없는 사례 |

- 재외동포간담회 등의 개최를 안내하는 초청장·안내장·팸플릿 등에 정당·후보자를 선전하거나 선거공약 등을 게재하여 발송하는 행위
- 한인회 등이 발행하는 회보·소식지에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등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을 게재하여 배부하는 행위
-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반대하거나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을 한인신문 등에 광고하는 행위

### ▶ 위반행위 조치사례

재외신문에 ‘국민 대다수의 뜻을 기만하고 폭압하는 나쁜 정권에 투표하지 맙시다. (중략) 우리 손으로 바꿉시다. (중략) 불의한 정권을 투표로 심판합시다!’는 내용 등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천 또는 반대하는 내용의 신문광고를 8회 게재 ⇨ 고발, 여권반납명령



## 4. 각종 행사 이용 선거운동

### | 할 수 있는 사례 |

- 단체가 선거와 무관하게 본연의 설립목적 범위 안에서 행사를 개최하는 행위
- 행사주최자가 정책간담회 개최장소의 면적 등을 고려하여 제한된 인사에게 개최일정을 알리는 초청장을 발송하는 행위

### | 할 수 없는 사례 |

- 재외동포 간담회·정책간담회·기자회견·향우회·한인회 행사 등 각종집회를 이용하여 정치자금을 모금하는 행위

## 5. 정당활동·정치자금 모금

### | 할 수 있는 사례 |

- 당원이 소속 정당에 당비를 납부하거나 당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정당·국회의원·후보자후원회에 「정치자금법」에 규정된 한도 안에서 후원금을 납부하는 행위

### | 할 수 없는 사례 |

- 재외동포 간담회·정책간담회·기자회견·향우회·한인회 행사 등 각종집회를 이용하여 정치자금을 모금하는 행위
- \* 정당·국회의원·후보자가 아닌 일반 재외국민이 정치자금의 기부를 목적으로 후원회나 이와 유사한 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없음

### ▶ 위반행위 조치사례

- 국회의원이 선거운동기간 전에 재외한인단체가 개최한 「재외선거 관련 월기대회」에 참석하여 “○○당을 지지해 달라, ○○당을 도와달라”는 발언 내용이 언론에 보도 ⇨ 수사의뢰
- 대학교수가 한인회 초청 강연회에서 ‘체육과 건강’ 강연을 하면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우호적 평가와 함께 입후보예정자를 반대하는 내용 발언



### ▶ 위반행위 조치사례

대사관에 설치된 기표소 안에서 특정 후보에게 기표된 투표지를 촬영하여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시 ⇨ 고발

| 정치관계법 위반사례예시 |

V. 정치관계법 위반사례예시

## 제21대 국회의원선거

# 재외선거 위반사례 안내

▣ 본 안내 자료는 2020년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국외에서 이루어지는 재외선거를 법이 지켜지는 가운데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로 치르기 위하여 재외국민이 ‘할 수 있는 사례’와 ‘할 수 없는 사례’ 중심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본 안내 자료에 관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화 82-2-1390)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ec.go.kr>)→재외선거→선거법 질의에 문의하시면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세계 속의 한국인,  
나는 **대한민국 유권자**입니다.

Koreans around the world,  
you are a voter of the Republic of Korea.



중앙선거관리위원회  
NATIONAL ELECTION COMMISSION